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

지정번호	2021-20-2호	지정 연월일	2021년 9월 29일
신청인	상호(명칭) 주식회사 뉴빌리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, 2층 대표자 성명 이상민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539-87-00775	
	명칭 실내·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주요내용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위치·경로를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·배달하고,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		
확인내용	유효기간 ○ 2021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(2025년 10월 3일까지 연장) 지정조건 ○ (특례내용) '뉴빌리티'가 실내·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○ (실증범위) 인천 연수구(송도)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, 향후 실증 범위 확장·시 관계부처와 협의 * 1차 인천 연수구(송도) 실증 착수 후 2차 서울 강남3구, 3차 서울 여의도,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, 4차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내 난지캠핑장 등으로 실증범위를 단계 적으로 확대할 계획 ○ (조건) 불임의 '부가 조건' 준수할 것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3년 8월 7일



< 부가 조건 >

- ①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경찰청, 행안부에서 제시한 조치 이행 필요
- △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(실내 안전성 시험) 검증 후 실증 시작(단, 협의된 제한 구역에서는 실증 준비를 위해 실내 안정성 시험 전 준비 운행 가능)
- △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, 충분한 보도 폭 확보,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등 정비,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, 실증지역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, 자율주행 로봇임을 알리는 표지를 로봇 외부에 부착 등
- △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 중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'의 통행은 보도 통행 조건과 동일한 조건부로 수용하며, 자전거·보행자 등이 동시에 다니는 도로"의 통행은 행안부와 사전 협의할 것
- *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도로보행자구역 / **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도로
- ② 실증지역의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되,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
-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필요
- △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·장소, 촬영범위·목적,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·부착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
- △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·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
- △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,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율주행 로봇 모니터링·원격제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
- 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, 개인(영상)정보 송·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
- △ 개인(영상)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,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·감독체계를 마련하고,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△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,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원회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
- ④ 승강기 무선통신 제어를 위한 통신모듈 등 설치 시 행안부의 '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'에 따른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을 것